

| |
|-----------------|
|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|
| 의 회 사 무 국 |
| 위 원 회 제 안 |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안연월일 | 2024. 5. 17. |
| 제 안 자 |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|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안연월일 : 2024. 5. 17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증설 필요성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로 증설하고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의 조정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 변경 (제2조제1호~제4호)
- 나.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조정 (제3조제1항, 제3조제2호~4호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제71조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0명이내”를 “9명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2명이내”를 “8명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산업건설위원회 8명이내

4. 문화환경위원회 8명이내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기획행정위원회

가. 부시장 직속기관

-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

나.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미래도시전략과, 세정과, 징수과, 정보통신과

다.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인구청년과, 아이돌봄과, 교육청소년과, 가족정책과

라.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총무과, 안전재난과, 새마을과, 회계과, 공공시설과, 민원봉사과

마.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복지정책과, 어르신복지과, 장애인복지과, 생활안정과

바. 평생학습원

사. 서울사무소

아.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

자. 동 소관(송정동, 원평동, 지산동, 도량동, 선주원남동, 형곡1동, 형곡2동)에 속하는 사항

3. 산업건설위원회

가.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기업지원과, 투자유치과, 노동복지과, 일자리경제과, 종합허가과

나. 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신산업정책과, 반도체방산과, 전략산업과

다.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도시계획과, 도로철도과, 하천과, 건축디자인과, 주택과, 토지정보과

라. 선산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행정민원과, 농업정책과, 농촌활력과, 농식품산업과, 축산과,

산림과

마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농촌지원과, 기술개발과

바. 읍·면(선산읍, 고아읍, 산동읍, 무을면, 옥성면, 도개면, 해평면, 장천면)소관에 속하는 사항

4. 문화환경위원회

가.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문화예술과, 낭만관광과, 체육진흥과, 위생과, 아시아육상추진단

나.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환경정책과, 환경관리과, 교통정책과, 대중교통과, 공원녹지과, 자원순환과

다. 구미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보건의료정책과, 건강증진과, 감염병관리과, 인동보건지소,

라. 선산보건소

마.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업무과, 수도과, 정수과, 하수과

바. 시립중앙도서관

사. 문화예술회관

아.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

자. 차량등록사업소

차. 동 소관(신평1동, 신평2동, 비산동, 공단동, 광평동, 상모사곡동,
임오동, 인동동, 진미동, 양포동)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의회운영위원회 <u>10명 이내</u></p> <p>2. 기획행정위원회 <u>12명 이내</u>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<u>12명 이내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기획행정위원회 :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, 정책기획과, 인구청년과, 예산재정과, 미래도시전략과, 교육청소년과, 정보통신과, 문화예술과, 낭만축제과, 관광인프라과, 체육진흥과, 체육시설관리과, 식품위생과, 총무과, 안전재난과, 새마을과, 세정과, 징수과, 회계과, 민원봉사과, 복지정책과, 노인장애인과, 아동친화과, 가족보육과, 생활안정과, 구미보건</u></p> | 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9명 이내</u></p> <p>2. ----- <u>8명 이내</u></p> <p>3. <u>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</u></p> <p>4. <u>문화환경위원회 8명 이내</u>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기획행정위원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부시장 직속기관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<u>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<u>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미래도시전략과, 세정과, 징수과, 정보통신과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다.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<u>인구청년과, 아이돌봄과, 교육청소년과, 가족정책과</u></p> |

소, 선산보건소, 평생학습원, 문화예술회관, 노인종합복지관, 서울사무소,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,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산업건설위원회 : 기업투자과, 노동복지과, 신산업정책과, 일자리경제과, 산단혁신과, 종합허가과, 도시계획과, 도시재생과, 도로철도과, 하천과, 건축과, 공동주택과, 토지정보과, 공공시설과, 환경정책과, 환경관리과, 교통정책과, 대중교통과, 공원녹지과, 자원순환과, (출)행정민원과, (출)농업정책과, (출)유통특작과,

라.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총무과, 안전재난과, 새마을과, 회계과, 공공시설과, 민원봉사과

마. 사회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복지정책과, 어르신복지과, 장애인복지과, 생활안정과

바. 평생학습원

사. 서울사무소

아.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

자. 동 소관(송정동, 원평동, 지산동, 도량동, 선주원남동, 형곡1동, 형곡2동)에 속하는 사항

3. 산업건설위원회

가.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기업지원과, 투자유치과, 노동복지과, 일자리경제과, 종합허가과

나. 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신산업정책과, 반도체방산과, 전략산업과

다.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

(출)축산과, (출)산림과, 농업
기술센터, 상하수도사업소, 금
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, 농
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차
량등록사업소, 읍·면소관에
속하는 사항

<신 설>

는 사항

- 도시계획과, 도로철도과,
하천과, 건축디자인과, 주택과,
토지정보과

라. 선산출장소 소관에 속하
는 사항

- 행정민원과, 농업정책과,
농촌활력과, 농식품산업과,
축산과, 산림과

마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
하는 사항

- 농촌지원과, 기술개발과

바. 읍·면(선산읍, 고아읍,
산동읍, 무을면, 옥성면, 도
개면, 해평면, 장천면)소관
에 속하는 사항

4. 문화환경위원회

가.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
속하는 사항

- 문화예술과, 낭만관광과,
체육진흥과, 위생과,
아시아육상추진단

나.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
는 사항

- 환경정책과, 환경관리과,
교통정책과, 대중교통과,

공원녹지과, 자원순환과

다. 구미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보건의료정책과, 건강증진과, 감염병관리과, 인동보건지소,

라. 선산보건소

마.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업무과, 수도과, 정수과, 하수과

바. 시립중앙도서관

사. 문화예술회관

아.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

자. 차량등록사업소

차. 동 소관(신평1동, 신평2동, 비산동, 공단동, 광평동, 상모사곡동, 임오동, 인동동, 진미동, 양포동)에 속하는 사항

4. (생략)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